

우) 150-01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 - 5 동부증권 B/D 11F /담당 이나나 전화(02)787-3815 / FAX (02)787-3809

마 케 팅 : 제08 - 13- 814 호

2008. 12. 23.

수 신 : 수신처 참조

참 조 :

제 목 : 투자신탁 약관 변경 통보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대상 펀드 : 동부 델타-ACE1 단위주식혼합증권투자신탁 제 5-4 호
동부 델타-ACE1 단위주식혼합증권투자신탁 제 5-6 호


2. 주요 변경 내용 : 보수인하

현	행	변	경
제40조(투자신탁보수)①~②(생략)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 자산운용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<u>7.625</u>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7.90 3.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0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75		제40조(투자신탁보수)①~②(종전과 동일)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 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 자산운용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<u>3.625</u> 2 ~ 4. (종전과 동일)	

3. 시행일 : 2008. 12. 29

첨 부 : 1. 변경약관 1부
2. 투자설명서 1부. 끝.

수신처 : 하나은행(판매), 하나은행(수탁), HSBC펀드서비스, 증권예탁결제원


동부자산운용주식회사
 대표이사 한동직